
「음향 영상장비 유지보수」

과업지시서

서대문구의회

목 차

I. 일반사항

1. 목 적	3
2. 유지관리 개요	3
3. 유지관리 대상	3
4. 유지관리 수행기준	3

II. 음향 영상시스템 주요현황

1. 본회의장 및 회의실 1,2	4
2. 음향 영상시스템 현황	4

III. 계약특수조건

1. 제1조(적용범위)~제17조(해석의 우선순위)	5~9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I. 일반사항

1. 목적

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및 1회의실, 2회의실에 설치된 음향 영상장비의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계측장비를 구비한 업체와 음향 영상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월 1회의 정기점검 등의 정기점검과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신속정확한 보수를 통해 상시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, 원활한 회의진행을 기여하고자 함

2. 유지관리 개요

- 가. 사업명 : 음향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
- 나. 사업기간 : 2015.01.01 ~ 2015.12.31
- 다. 유지관리 예산 : 금1,944,000원(일백구십사만사천원)
- 라. 계약방법 : 수의계약(연간단가계약)

3. 유지관리 대상

- 가. 본회의장
 - 1) 음향시스템(마이크 외 음향장비 일체)
 - 2) 영상시스템(카메라 외 영상장비 일체)

- 가. 회의실 1,2
 - 1) 음향시스템(마이크 외 음향장비 일체)
 - 2) 영상시스템(카메라 외 영상장비 일체)

4. 유지관리 수행기준

- 가. 각종 회의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
- 나.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기·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.
- 다.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,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

제시하여야 한다.

마. 월간점검시 통신관련기능사 이상의 기술자를 월 1회 이상 투입하여 점검하고, 분기점검시 통신관련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및 통신관련 기능사 1인을 매분기 1회 이상 투입하여 점검한다.

바.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음향 영상시스템 유지 보수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
사. 음향 영상장비의 노후 시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,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II. 음향 영상시스템 주요현황

1. 본회의장 및 1,2회의실

N/O	사용 장소	비 고
1	본회의장 A/V SYSTEM	
2	회의실 1 A/V SYSTEM	
3	회의실 2 A/V SYSTEM	

2. 음향 영상시스템 현황

가. 대 상 : 본회의장 및 회의실 1,2

나. 위 치 :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-22

다. 설치장비

- 음향시스템 : 마이크, 앰프, 스피커 등
- 영상시스템 : 카메라, 모니터 등
- 기 타 : CATV

Ⅲ. 계약특수조건

제1조(적용범위)

본 계약 특수조건은 서대문구의회 음향 영상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서대문구의회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(주)에이치엔엠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사이에 적용한다.

제2조(유지보수 대상)

- ①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 [붙임1] 과 같다
- ② 제1항의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 “갑”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3조(유지보수 범위)

유지보수는 응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
- ②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
- ③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
- ④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, 분석 및 조치
- ⑤ 법·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보완 개발
-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
- ⑦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산출물 이력관리, 현행화
- ⑧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·관리에 따른 기술상담
- ⑨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

제4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15 .1월부터 2015.12월까지로 한다.

제5조(유지보수 시간)

유지보수는 연중 24시간으로 한다.

제6조(정비점검)

- ① “갑”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“을”은 정비점검을

하여야 하고, 점검결과를 “갑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“갑”은 사전 장애예방 등 필요한 경우 “을”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, 수시점검이 있으며,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및 분기 1회 이상, 수시점검은 필요시 “갑”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. 월간점검 시에는 육안점검 및 선로점검, 카메라동작상태, 등 전반적인 시스템동작을 점검 한다.
- ④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.
- ⑤ “을”은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, 그 조치결과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애처리)

- ① “을”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장애발생시 신고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상기기로 대체하고 수리할 수 있으며, 고장난 기기는 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완료하여 감독관의 확인 후 재설치 하여야 한다.
- ⑤ 장애 처리시 고장수리, 경미한 노후 부품교체, 설비이동,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한다. 그리고 기기 고장 및 교체 부품이 발생 하였을시 당초 규격품 이상 부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경비 또한 용역비에 포함한다.
- ⑥ 천재지변, 파손, 오손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고장기기는 용역수행자가 보수하여야 한다.
단, 천재지변으로 인한 낙뢰사고 중 낙뢰방지기가 부착된 기기의 고장은 제외로 한다.

- ⑦ 계약자는 용역부분별 점검일지로서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.
(Check List 확인 및 기록)
- ⑧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기기 및 장비파손은 현장 확인 후 사고 보고서를 제출 후 , 가해자와 협의 긴급 복구 처리한다.
- ⑨ 장애처리시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작업도구는 “을”의 부담으로 자체조달 하여야 한다.
- ⑩ 상기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“을”이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 시간당 본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관리용역비 상당액의 1/1000을 공제할 수 있다.

제8조(인력확보 및 관리)

- ① “을”은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“갑”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“을”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.
- ③ “을”의 사정으로 유지보수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“갑”과 협의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는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“갑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“을”이 기술적·법적 책임을 진다.
- ⑥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인적·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“을”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“갑”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.

제9조(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)

- ①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.
- ② “을”은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“을”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.

-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④ 본 계약체결 후 “을”은 부품비, 수선비, 인건비, 기타제작비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“갑”에게 이를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손해배상 및 책임)

- ① “을”은 유지보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이 유지보수 작업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“갑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“을”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1조(계약변경 및 해지)

- 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,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.
- ③ “갑”은 계약기간중 “을”이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“을”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“갑”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“을”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할법원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13조(보안책임)

- ① “을”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② 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갑”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

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“을”은 “갑”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“갑”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·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.

제14조(하도급 제한)

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,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“갑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단 “갑”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.

제15조(유지보수 계획서 제출)

“을”은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기타 특기사항)

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제17조(해석의 우선순위)

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계약서
2. 계약특수조건
3.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
4.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